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수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3. 20.

발의자 : 김수홍 · 안규백 · 윤준병
신정훈 · 홍성국 · 노웅래
최혜영 · 김성주 · 이형석
박광온 · 김남국 · 강득구
전용기 · 정필모 · 전해철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(이하 “국가기간교통망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이 그 정책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

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).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략)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· 2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u>2의2.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</u>
3. ~ 8. (생략) ③ ~ ⑤ (생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